

2021 대구시설공단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대구시설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의 생계 지원과 안전한 공공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2021 대구시설공단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 5. 12.

대구광역시 /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명 : 2021 대구시설공단 희망근로 지원사업
- 모집인원 : 105명
 - 일반모집 : 97명
 - 구분모집 : 8명(장애인 4명, 취업지원대상자 4명)
- 접수기간 : 2021. 5. 12.(수) ~ 18.(화)
- 근로기간 : 2021. 6. 1. ~ 8. 31. ※ 근로기간은 사업운영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공고일(2021. 5. 12.)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대구시민
- 신청방법 : 워크넷(www.work.go.kr) 인터넷 접수(워크넷-채용정보-정부지원일자리)

2. 자격요건

- 공고일(5.12.)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대구시민으로서 저소득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휴업자·무급휴직자 등 지역 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대구시민
 - ▶ 저소득층,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 저소득층 취약계층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1인 가구는 120% 이하

우선선발 기준(일반모집)

(1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가 아닌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⑫ 해당자

**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2순위)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 재공고시 반복참여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2순위에 포함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1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 ⑫ 노숙자 ⑬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여성가장 :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지만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요건 >

-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무급휴직 중인 자: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자 및 휴·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 구분모집 : 아래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지원자격(구분모집)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취업지원대상자)

-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자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자
-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자
- ④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자
-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대상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1인 가구의 경우 120%)를 초과하거나, 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5.6.)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공공 일자리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공공 일자리 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
 - * 1년 근무기준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 공공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동일 기간에 2개 이상의 공공일자리 참여하는 경우)
-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
 - ①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선발완료 후 건강검진 별도 안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3. 근로조건

○ 임 금 : 시급 8,720원 (임금지급일 : 익월 5일) * 주휴수당 별도

일 근무시간	3시간 (주15시간)	4시간 (주20시간)	5시간 (주25시간)	6시간 (주30시간)	7시간 (주35시간)	8시간 (주40시간)
월 급여(원)	680,160	906,880	1,133,600	1,360,320	1,587,040	1,813,760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30시간)

▶ 주간 근로일수 개근 시 주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 부여

▶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부여(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소에 따라 주말, 공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무장소 : 붙임1 참조

※ 신청상황 등에 따라 희망하는 근무지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주요업무 ※ 근무지 상황에 따라 세부업무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소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생활지도 및 안내 등
- ※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2m거리두기, 발열체크, 명단작성 등
- 사업소 환경정비 및 생활방역 등
- 기타 공공시설물 관리 업무 보조 등

○ 기타사항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분증,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세대주 및 세대원 자필 서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월),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인터넷 접수 시 자료 스캔 후 첨부

○ (취업지원대상자) 공통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등 추가서류) 해당하는 자, 인터넷 접수 시 자료 스캔 후 첨부

* 최종 선발 후 원본 서류 제출

①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무급휴직자 : '20.2.23.이후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무급휴업·휴직 상태 무급 휴직확인서(공고문 첨부 또는 기관별 양식) 제출

▶ ('20.2.23.이후) 휴·폐업자, 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상 휴·폐업자 : 휴·폐업확인서(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매출 감소(50% 이상) 증빙자료 등 첨부
(예시 : 2019. 6월/2020. 6월 매출전표, 부가가치세신고증명, 카드사 자료 등)

▶ 소득이 급감한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 '20. 2. 23.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② 기타 취업취약계층별 해당서류

구 분	필요서류	비 고
저소득층	-	자체 조회
장애인	-	자체 조회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자체 조회
결혼이민자	① F2/F5/F6 비자 보유여부가 기재된 외국인 등록증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기본증명서	결혼이민 증빙이 가능한 필요서류 택1 제출
여성가장	①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②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실종신고서 ④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⑤ 질병 등에 대한 진단서 ⑥ 군복무확인서 ⑦ 재학증명서 ⑧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⑨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지단체 장의 확인서 ⑩ 이혼소송확인서	①번 서류 : 필수 제출 ②~⑩번 서류 : 여성가장 임을 증빙할 수 있는 해 당 서류 제출
성매매 피해자	①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 확인서 ②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①, ② 중 택1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위기청소년	①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 보호관찰청소년 확인서 ③ 보육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①~③ 중 택1
갱생보호 대상자	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확인서 ② 갱생보호법인 확인서	①, ② 중 택1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노숙인	관련시설에서 받은 추천서	-

5. 선발절차 안내 및 유의사항

○ 선발절차



※ 위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선선발 대상자 면접시험 안내 : 5. 24.(월) / 개인 SMS 안내

○ 최종결과 안내 : 5. 28.(금) / 개인 SMS 안내

○ 유의사항

- ▶ 우선선발 자격자 중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 인터넷 접수 시 신분증 등 증빙서류는 사본을 우선 제출하되, 최종 선발 시 선발기관에 원본 제출(신청서 등 허위 제출 시 사업참여 불가)
-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 신청서에 기재된 희망 근무지를 우선 고려하되, 신청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지는 조정·변경 될 수 있음.
- ▶ 모집인원 미달 및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을 선발 할 수 있음.
- ▶ 선발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발 취소
- ▶ 희망근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대구시설공단 희망근로 지원사업 담당자(☎053-603-1122)

참고 1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근무 예정지

근무 예정지	인 원	사무실 위치	비 고
계	105	-	-
두류수영장	6명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대구국제사격장	20명	대구 북구 문주길 170	
대덕승마장	6명	대구 달서구 앞산순환로 206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0명	대구 달서구 본동 학산로 130	
서재문화체육센터	10명	대구 다사읍 다사로 750	
대구실내빙상장	4명	대구 북구 고성로 191	
명복공원	4명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47	
도심공원	5명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70	
지하상가	5명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지하 470	
대구콘서트하우스	2명	대구 중구 태평로 141	
범어지하도상가	4명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지하 2410	
신천둔치	5명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72	
테크노폴리스로	3명	대구 화원읍 테크노폴리스로 1027	
농수산주차상가	11명	대구 북구 매천로 18길 34	
동대구역광장	10명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 신청상황 등에 따라 희망하는 근무지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2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21년 기준, 단위: 원)

① 1인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

②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6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7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8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9인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판단방법)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예: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69,016원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